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전략수출금융기금 설치〉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295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1. 전략수출금융기금 설치<br>(안 별표 2 제72호 신설 및 별표 3 제11호 신설) ..... | 2 |



##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한정애의원 등 15인

나. 발 의 일 : 2026. 1. 23.

다. 회 부 일 : 2025. 1. 26.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여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전략수출금융기금을 금융성 기금으로 설치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및 별표 3 제11호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2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Ⅲ. 검토의견

#### 1. 전략수출금융기금 설치

(안 별표 2 제72호 및 별표 3 제11호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 전략수출금융기금 설치 근거 마련 |

「국가재정법」 제5조는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sup>1)</sup>

또한, 동법은 별표 3에 금융성 기금을 별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그 외 기금에 비해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변경 재량을 확대하고 있음<sup>2)</sup>.

이에 개정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16289호)의 의결을 전제로, 동 법률안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 2에 마련하고, 전략수출금융기금을 별표 3에 따른 금융성 기금에 추가하려는 것임.

1)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2)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2.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로 한다.

최근 방위산업, 원전 등 분야에서 대규모·장기 수출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수출금융 지원체계에서는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수출기업들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수출수주에 따른 이익이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전략수출<sup>3)</sup>금융기금을 설치하여 현행 수출금융 지원체계가 포괄하지 못하는 대규모·장기 수출계약 수주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수출기업이 해당 지원과 결부된 계약을 수주하는 경우 지원금액의 일정 비율을 전략수출상생기여금으로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수출수주에 따른 이익을 타 수출금융 지원 및 중소기업 수출지원으로 환류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략수출금융기금은 수출금융지원계정과 산업생태계지원계정으로 구분되는데, 수출금융지원계정은 정부·정책금융기관 출연금과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전략수출 분야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을 실시하는 계정이며,

산업생태계지원계정은 정부납부기술료와 수출금융지원계정에서 전입된 전략수출상생기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수출산업생태계에 속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와 지원을 실시하는 계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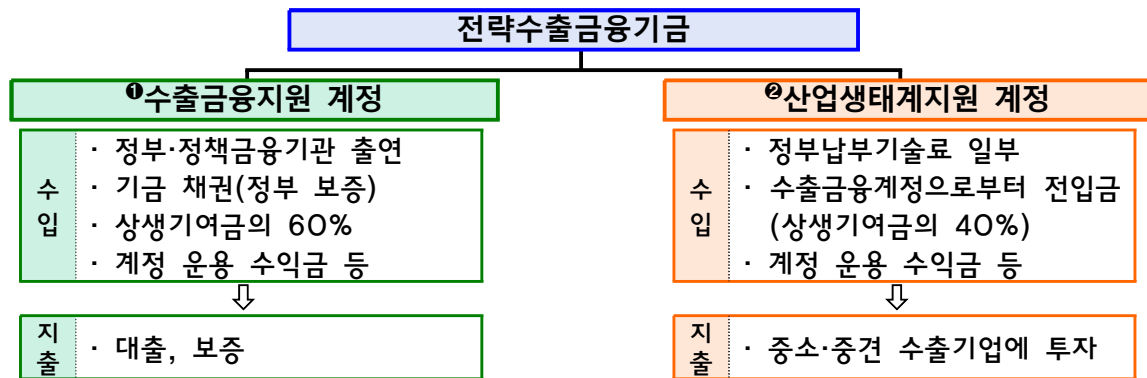
---

3) 제정안은 “전략수출”을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신시장 개척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수출’로 정의하고 있음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주요 내용]

| 구 분                       |    | 내 용                                                                                                                                                                                                                                                                |
|---------------------------|----|--------------------------------------------------------------------------------------------------------------------------------------------------------------------------------------------------------------------------------------------------------------------|
| 법률명                       |    |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
| 기금명                       |    | 전략수출금융기금                                                                                                                                                                                                                                                           |
| 계 정                       |    | 수출금융지원계정, 산업생태계지원계정                                                                                                                                                                                                                                                |
| 수출<br>금융<br>지원<br>계정      | 재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출연금</li> <li>◦ 정책금융기관 출연금</li> <li>◦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한 자금</li> <li>◦ 전략수출상생기여금</li> <li>◦ 정부·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li> <li>◦ 수출금융지원계정 운용수익금</li> <li>◦ 산업생태계지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차입금</li> <li>◦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li> </ul> |
|                           | 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수출을 위한 수출금융 지원</li> <li>◦ 수출금융지원계정 운용비용</li> <li>◦ 차입금·이자 상환</li> <li>◦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li> <li>◦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li> </ul>                                                                                     |
| 산업<br>생태<br>계<br>지원<br>계정 | 재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표에 해당하는 정부납부기술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li> <li>◦ 지원계정에서 출자·투자한 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li> <li>◦ 정부·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li> <li>◦ 산업생태계지원계정 운용수익금</li> <li>◦ 수출금융지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차입금</li> <li>◦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li> </ul>     |
|                           | 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기술·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li> <li>◦ 산업생태계지원계정 운용비용</li> <li>◦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기술·수출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집합투자기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투자</li> <li>◦ 차입금·이자 상환</li> <li>◦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li> </ul>              |
| 관 리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수출입은행</li> </ul>                                                                                                                                                                                                        |

## [전략수출금융기금 구성]



자료: 재정경제부

다만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영되며 칸막이식 운용에 따라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재정법」 제14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기금 신설 심사 요건으로 ①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②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③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 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④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을 제시하고 있으므로<sup>4)</sup>, 해당 기준에 따라 기금 신설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할

- 4)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 결과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에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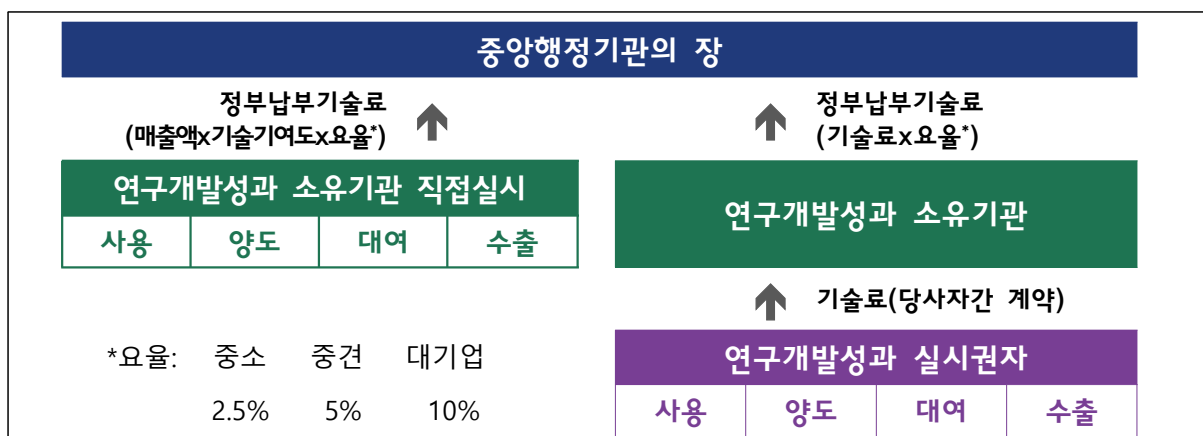
### (1) 기금 재원과 목적사업의 연계성

전략수출금융기금 중 수출금융지원계정의 재원은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한 자금과 전략수출상생기여금 등으로, 전략수출을 위한 수출금융 지원이라는 목적사업과 연계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반면 산업생태계지원계정의 경우 정부납부기술료의 일정 금액을 재원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정부납부기술료는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정부납부기술료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게 된 기관이 연구개발성과의 사용·양도·대여·수출을 통해 수익을 획득한 경우 그 일부를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에게 납부하는 것임.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개념도]



계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중에는 전략수출 분야와 무관한 기관도 포함되어 있고, 연구개발성과를 통한 수익 중에는 수출성과와 무관한 수익도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정부납부기술료의 일정 비율을 일괄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귀속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의가 필요함.

또한, 기술료 징수의 근거법률 중에서는 징수한 기술료를 관련 사업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sup>5)</sup>, 정부납부기술료를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귀속하도록 하려는 경우 법률 간 정합성을 위하여 해당 근거법률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산업생태계지원계정은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제정안이 전략수출분야에서 지원을 받은 수출기업이 그에 따른 이익의 일부를 관련 산업생태계 전반에 환류하도록 하려는 취지를 고려할 때, 동 계정의 지원대상이 되는 수출기업의 범위를 전략수출 분야 산업생태계에 속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 (2) 신축적 사업추진 필요성

전략수출금융기금은 대규모·장기 수출수주에 대응하여 적기에 구매자금 등 지원을 실시하려는 것으로서, 수출수주의 빈도 및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축적 사업추진 필요성이

---

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9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아 신기술을 사업화한 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는 사람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과 관련된 사업에 기술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인정된다고 보임.

### (3)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중장기적 안정성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재원은 정부 출연금,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하고 정부가 보증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 수출지원을 받은 기업이 납부하는 전략수출상생기여금 등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또한 세계 각국의 방위비 지출 확대 기조 등으로 전략수출 분야에서 대규모 수출기회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수출수주에 대한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전략수출을 지원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

### (4) 기금 설치의 효과성

현재도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구매자금 융 등의 수출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전략수출금융기금은 그동안 제도적 제한으로 정책금융 지원에 한계가 있었던 대규모·장기 수출수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별도 기금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다만, 기존 수출지원과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금의 목적과 재원, 용도를 ‘전략수출’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개정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162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안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별표 2<br><u>&lt; 신 설 &gt;</u> | 별표 2<br><u>72.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u>                         |
| 별표 3<br><u>&lt; 신 설 &gt;</u> | 별표 3<br><u>11.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u><br><u>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u> |

문의처

02)6788-5160